

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2017. 1.

특 허 청

특허심사제도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이 심사관에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에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추가하는 한편, 특허청장이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해당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여 정정된 내용을 추가함.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0. 11. ~ 1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
소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류기호
2.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고안에 관한 사항
3.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21조제2항에 따
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의3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
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0.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p> <p>1. ~ 6의2. (생략)</p> <p><u><신설></u></p> <p>7. ~ 13. (생략)</p> <p>제7조(실용신안공보) ① (생략)</p> <p><u>②등록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u></p> <p>1. <u>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u></p> <p style="margin-left: 20px;"><u>가. 실용신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u></p> <p style="margin-left: 20px;"><u>나. 실용신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u></p>	<p>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p> <p>-----</p> <p>-----</p> <p>-----</p> <p>-----</p> <p>-----</p> <p>-----</p> <p>1. ~ 6의2. (현행과 같음)</p> <p><u>6의3. 「발명진흥법」 제24조의 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u></p> <p>7. ~ 13. (현행과 같음)</p> <p>제7조(실용신안공보) ① (현행과 같음)</p> <p><u>②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p>1. <u>분류기호</u></p> <p>2. <u>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고안에 관한 사항</u></p> <p>3. <u>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u></p>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 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5의2. 법 제5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고안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한다)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 말한다)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0.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11.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동법 제136조 또는 동법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의3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0.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특허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21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

-----.

⑤ (현행과 같음)

<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8243